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3-28번지 일대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2026년 07월 30일자로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7. 30.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3-28번지 일대
- 나. 면 적 : 19,795.8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나. 준공 예정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31, 702호

5. 변경내용

- 가. 구역확장
- 나. 조합원 증가
- 다. 임원(이사), 대의원 증가
- 라. 조합원 변경
- 마. 정관 변경

6.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23조의3 참고)

